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전하고, 불교문화를 전시·체험·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전문적·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
- 우리시 명품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, 지역 관광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 현황
 - 명 칭 :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
 - 위 치 : 도개면 도개리 320번지 일원
 - 규 모 : 부지 36,919m², 건축연면적 2,537.14m²
 - 사업비 : 20,000백만원(국 13,100, 도 1,684, 시 5,216)
 - 사업기간 : 2011 ~ 2017년
 - 주요시설
 - 체험 : 전통가옥체험관, 교육관, 사찰음식체험관, 생활관
 - 전시 : 스토리텔링관, 전시가옥
 - 기타 : 어울마당, 잔디마당, 편의시설(벤치·정자), 주차장 등
- 수탁기관 : 구미시설공단

○ 위탁기간 : 5년 이내 * 첫 회 3년간 예정

○ 위탁업무

- 초전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
- 신라불교문화에 관한 전시·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
-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

○ 운영 소요예산 : 연 571,381천원 정도

(단위:천원)

계	인건비 (A)	시설유지비 (B)	일반관리비 ((A+B)*0.6)	비 고
571,381	308,766	245,973	16,642	

※ 인건비(7명) : 일반직(행정·시설) 3명 / 무기계약(숙직) 3명 / 환경미화(실버) 1명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,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4.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○ 추진경과

- 2010. 5. 3대문화권 조성 전략사업 선정
- 2010. 11. 중앙 투·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
- 2011. 2.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
- 2013. 12. 실시설계용역 완료
- 2014. 1~12. 건축공사(1차) 시행

- 2015. 1~12. 건축공사(2차) 시행
- 2016. 1~12. 건축공사(3차), 조경공사, 전시콘텐츠 용역 시행
- 2017. 5. 건축공사(4차) 시행 중

○ 향후계획

- 2017. 6.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공포
- 2017. 7. 총괄공사 준공, 위·수탁 협약 체결
- 2017. 8~9. 시운전
- 2017. 10. 개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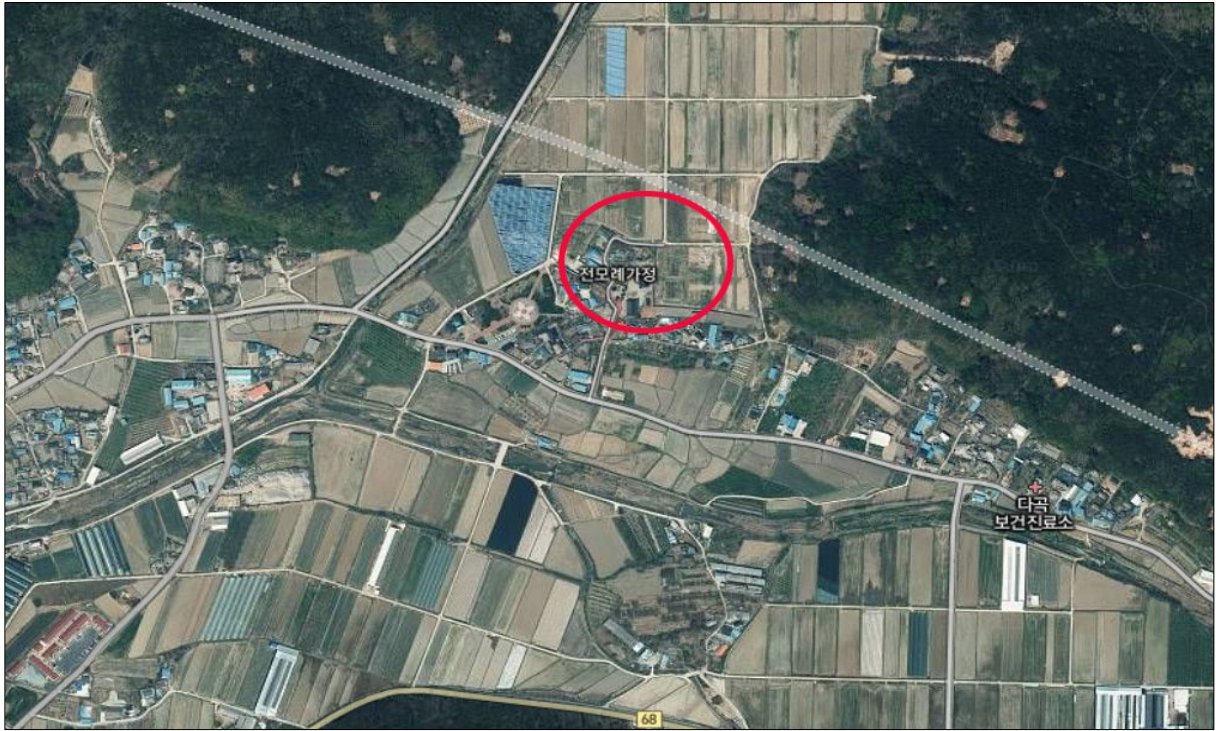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(m ²)	필 지	면적(m ²)	
합 계			26	2,537.14	28	36,919	
공유 재산	행정 재산	공용 재산					
		공공용 재산	26	2,537.14	28	36,919	
		기업용 재산					
		보존용 재산					
	일반 재산	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위탁시설 현황

구 분		건 물		비 고
		동수	연면적(m ²)	
계		26	2,537.14	
스토리텔링관		1	1,467.26	전시실, 특산품판매, 관리사무실, 기계실 등
전시가옥	안채	4	86.40	
	헛간채	5	57.60	
	우사	1	23.04	
	초정	1	11.52	
전통가옥 체험	체험관1	2	100.08	안채 2동
	체험관2	2	105.98	안채 2동
	체험관3	2	54.36	안채, 광채
	체험관4	4	125.37	안채, 별채, 광채, 화장실
불교문화 체험	교육관	1	133.65	
	사찰음식체험관	1	139.32	
	생활관	1	174.60	
기타	화장실	1	57.96	

❏ 위치도



❏ 조감도



현장사진

○ 전시가옥, 교육관 전경



○ 전통가옥체험관

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문화관광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박 종 수
	담 당	남 재 식
	담 당 자	박 근 아 (480-6642)